



미국 연방교육부(USDE)의 대학인증평가기구 지정에 대한 고찰¹⁾

이 영 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책임연구원

I. 미국 대학평가의 기원과 배경

세계가 하나의 단일시장, 이룩하여 지구공동체로 인식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주요 화두는 '교육 경쟁력'이다. 특히 '대학교육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뉴스위크』 선정 '세계 100대 글로벌 대학'으로 볼 때, 미국 대학의 경쟁력은 가히 세계적이다. 세계 100대 글로벌 대학 중 45개 대학이 미국 대학이다. 이처럼 미국 대학들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이겠지만 자율적 질 관리에 초점을 둔 대학평가 역시 큰 몫을 해 온 것으로 생각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다양한 형태의 대학들이 설립되었던 당시 미국의 대학들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당시 카네기재단은

“대학이 될 수 있는 학교와 고등학교가 되어야 하는 학교를 구분해야 한다”고 했을 정도로 할량 미달의 대학들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적 질 관리 규제 장치로 등장한 것이 미국의 대학평가이다. 최초 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은 미국의학협회에 의해 1910년 시작되었고 치의학(1918), 법학(1923), 공학(1936), 약학(1940) 등으로 확산되었다. 기관평가는 1913년 NCACS(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econdary Schools)²⁾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시작된 미국의 대학평가는 대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accrediting)하는 기관평가와 개별 학문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프로그램 평가로 정착이 되어, 오늘날 미국의 비영리 고등교육 기관 중 95% 이상이 지역평가인증기구와 전문분야별 평가인증기구의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1) 이 글은 김순남(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비교교육연구』 제15권 제4호에 '미국 연방교육부(USDE)의 대학평가 인증기구 인정제도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 중 연방교육부의 기관평가 인증기구 지정의 목적과 절차 및 운영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제작성함.

2) NCACS는 기관평가를 실시한 최초의 지역평가인증기구임.

덧붙여 미국의 대학평가는 지역평가인증기구와 전문 분야별 평가인증기구가 실시하는 기관평가와 프로그램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평가인증기구와 전문분야별 평가인증기구가 과연 대학과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는 물적·인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적격성을 검증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평가인증기구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일은 평가인증기구의 협의체로 조직된 COPA(Council on Postsecondary Accreditation)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COPA가 해체된 이후 그 역할은 CHEA(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³⁾가 담당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학평가는 자율적 질 관리를 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COPA와 CHEA같은 비정부기구가 평가인증기구의 적격성을 검증하여 기관평가인증기구와 프로그램평가인증기구를 지정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미국연방교육부(USDE)도 기관평가인증기구와 프로그램평가인증기구 지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CHEA와는 별도로 고등교육평가를 담당할 인증기구를 지정하고 있다. 그 배경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고등교육에 대한 질 관리, 재정 지원을 위한 대학기관평가의 필요성, 그리고 고등교육 개방과 관련하여 그 품질에 대한 정부 보증의 필요성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USDE의 대학평가인증기구 지정의 목적,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USDE의 대학평가인증기구 지정의 목적

미국 USDE에 의한 대학평가인증기구의 지정과 CHEA에 의한 대학평가인증기구 지정을 비교해 보면, 대학평가인증기구 지정의 주체가 정부라는 점과 민간단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CHEA의 대학평가인증기구 지정은 회원 대학이 자율적으로 협의한 규약에 따라 시행되는 반면, USDE의 대학평가인증기구에 대한 지정은 미국 연방고등교육법 'Title 34'의 규정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강제성을 갖는다. 특히, 미국 연방고등교육법 'Title 34'에는 연방교육부가 대학평가인증기구를 인정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과 연수의 질에 관한 신뢰할 만한 권위를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인증기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2차적인 목적은 학생 장학금 명목의 재정 지원 수단으로 삼는 데 있다(HEA, Title 34).”

즉, 미국이 정부차원에서 USDE가 고등교육평가인증기구를 인정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연방정부의 학생지원 예산들이 양질의 대학교육 코스와 프로그램에 지원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USDE에 의해 인정된 고등

3) CHEA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학평가인증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사적이고 비정부적인 조직으로서 3,000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과 60여 개의 전국적·지역별·전공별 평가인증기구가 연합하여 운영되고 있음.

교육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고등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즉, 연방교육부 장관에 의해 인정받은 인증기구가 인증한 고등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정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고등교육법 'Title IV'의 해당 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의 신청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제공하는 교육과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연방교육부는 미국 연방교육부장관에 의해 인정된 전국단위의 인증기구 혹은 지역 단위의 주(State)별 인증기구에 의해 인증된 고등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탐색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연방교육부는 대학평가인증을 위한 고등교육기관과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6,900개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USDE는 국가적 범위의 인증기구 52개, 광역 범위의 인증기구 11개, 'Title IV' 목적으로 인정된 인증기관 40개, 주 승인 공립 고등직업교육인증기구 및 간호교육인증기구 각각 6개 인증기구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USDE, 2005).

셋째, 국제화 및 개방화에 따라 정부 차원의 고등교육에 대한 품질 보장에 대한 국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의 국제협정 즉, WTO, GATS, Doha Round 등의 고등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및 개방화에 대한 협정체결 과정에서 국가별로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고등교육평가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가들까지도 정부 주도

의 고등교육평가를 실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비정부 기관인 CHEA 중심의 대학인증평가 방식을 보완하여, USDE가 고등교육평가인증기구를 인정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고등교육 품질 보장을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HEA가 그동안 고등교육 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평가기관을 인정해 왔지만, 그와 별도로 최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가 강조되고, 고등교육 개방에 따른 국가 차원의 품질 보증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연방교육부 차원에서 인증기구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Ⅲ. USDE의 대학평가인증기구에 대한 지정 절차 및 기준

USDE의 대학평가인증기구의 지정 방법은 양적 방법보다는 질적 방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대학평가인증기구가 USDE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체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연방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들은 국가 자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USDE 평가팀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해야 하고, 평가팀은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질적으로 검토한 후 기관 질 통합 자문위원회를 열어 중간 검토를 하고, 검토 의견을 연방교육부 장관에 보고하면, 연방교육부 장관은 '지정' 혹은 '지정 후보(candidate recognition, prerecognition)' 등으로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

1. USDE의 대학평가인증기구 지정 절차

USDE의 대학평가인증기구에 대한 지정은 2000년 7월 1일자로 적용되고 있는 미국 연

방고등교육법 'Title 34'의 규정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평가인증기구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 연방고등교육법 'Title 34'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명으로 요구하는 절차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미국 연방고등교육법 'Title 34'에 제시되어 있는 대학평가인증기구 인정 절차는 인증기구의 인정 신청, 연방교육부 담당자에 의한 인증기구의 인정 신청서 검토, 기관 질 통합 국가자문위원회에 의한 심사, 연방교육부 장관에 의한 검토와 결정, 인증기구의 연방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에 대한 청원 순이다.

USDE의 대학평가인증기구 지정의 모든 절차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교육부는 대학평가인증기구가 제출한 지정 신청서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평가인증기구의 인증 실적 및 제3집단의 논평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그 적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때 대학평가인증기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한 대학평가인증기구는 연방교육부 담당자의 분석과 제3집단의 논평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방교육부 담당자는 대학평가인증기구의 소명에 대하여 추가 검토의견을 내도록 하여 신청자와 심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 질 통합 국가자문위원회 심사에서는 해당 대학평가인증기구, 연방교육부 담당자, 다른 이해관계 집단 등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연방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연방교육부장관은 자문위원회의 건의, 시니어 교육부장의 건의(있을 경우), 대학평가인증기구의 신청서와 증빙 서류, 연방교육부 담당자의 분석, 제3집단의 논평, 교육부 담당자의 분석과 제3집단의 논평에 대한 해당 대학평가인증기구의 대응,

교육부 담당자 추가 검토의견, 자문위원회에서의 구두 발표,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청원 자료 등을 근거로 지정을 승인·거부·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단 인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USDE의 대학평가인증기구에 대한 지정 준거

미국 연방교육부의 인증구에 대한 지정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미국 전 지역 및 광역 지역 단위 소재 대학을 평가하는 인증기구이며, 다른 하나는 주 단위의 대학을 평가하는 인증기구이다.

미국의 연방교육부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인증구에 대해 다른 지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들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광역 및 전국 범위의 대학평가인증구에 대한 지정 준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USDE, 2005).

1) 기본적인 적격성 요구 사항

대학평가인증기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 대학평가인증기구는 연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여부, 인증활동의 지리적 범위, 인증 경험, 인증 또는 불인증 기준의 타당성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연방 프로그램과의 연계면에서 대학평가인증기구는 다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약 대학평가인증기구가 고등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인증한다면, 그 고등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은 미국 HEA에 규정된 프로그램의 요구조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인증활동의 지리적 범위면에서 인증

기구는 인증 활동이 주 내, 광역 범위, 미국 전체 범위 중에서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셋째, 최초로 대학평가인증기구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한 대학평가인증기구가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인증기구로서 지정을 받고자 요구한다면 한 개 프로그램 이상을 '인증' 혹은 '인증 후보'로 수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넷째, 대학평가인증기구가 부여하는 인증 및 불인증의 기준이 제3자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즉, 인증 또는 불인증의 기준, 절차, 그리고 의사결정이 미국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2) 조직적, 행정적 요구사항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대학평가인증기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목적과 조직 등에 관련하여 ① 일정한 수의 고등교육기관을 자발적인 회원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 ②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이 기관 운영의 주 목적인 점, ③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으로 최소한 사회 일반 대표의 1/7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한다.

대학평가인증기구는 인증활동을 수행할 만한 행·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대학평가인증기구는 ① 인증 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충분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② '인증'과 '인증 후보'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만큼 인증기구가 시행하는 인증에 대한 기준과 절차, 정책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현장 평가를 수행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 ③ 기관을 인증하는 대학평가인증기구의 경우에는 평가·정책, 의사결정기구로서 학문적·행정적 요원을 갖추고 있다는 점, ④

특수 전문직에 대해 학생을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이나 단일 목적을 가진 기관을 인증하는 인증기구의 경우는 평가·정책·의사결정기구에 교육자와 실천가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 ⑤ 의사결정기구에서 일반 대중의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⑥ 이해관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인증기구의 이사회, 위원회, 평가팀 구성원, 전문가, 행정 직원, 기관 대표자 등에 의해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학평가인증기구는 각 고등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인증과 인증 후보 심사 기록 즉, 현장 평가팀 보고서, 현장 평가팀 보고서에 대한 고등교육기관의 대응, 주기적 검토 보고서, 정기적인 심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인증기구에 의해 수행된 특수 심사의 모든 보고서, 가장 최근의 자체 연구보고서의 복사본 등이 포함된다는 점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이나 '인증 후보'에 대해 이루어진 모든 의사결정(의사결정에 관련된 모든 의견 교환 등을 포함)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3) 요구 기준과 적용

대학평가인증기구가 인증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이나 연수의 질에 대해서는 인증기구가 신뢰할 만한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학평가인증기구는 다음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인증' 기준 설정 영역

대학평가인증기구는 ① 기관의 대전제가 되는 목적에 비추어 성공적인 학생 성취도, 과정

이수를 고려, 주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시험 합격률 및 취업률, ② 교육과정, ③ 교직원, ④ 시설·장비·공급하는 물품, ⑤ 규정된 운영 기준에 적합한 재정적, 그리고 행정적 역량, ⑥ 학생 지원 서비스, ⑦ 선발·입학·학사력·출판물·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⑧ 프로그램의 기간, 제공된 학위와 자격증의 목적, ⑨ 인증기구에 의해 받은 학생 불만에 대한 기록, ⑩ 고등교육법 'Title IV' 를 준수한다는 기록(이는 연방교육부 장관에 의해 제공되는 가장 최근의 학생 대부 시행 자료, 재정 및 이행 감사 결과, 프로그램 심사, 교육부 장관이 그 기관에게 제공하는 다른 정보 등을 포함) 등에 인증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나) 효과적인 의사결정 메커니즘

대학평가인증기구는 '인증' 또는 '인증 후보' 를 결정하는 최종판단에 이르기까지 평가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 대학평가인증기구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① 대전제의 목적에 일관되는 명세화된 교육 목표를 유지하고 이것이 학위나 자격증을 수여하는 견지에서 적당인가, ② 이미 기술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적인가, ③ 최소한 공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준에 맞는 학위와 자격증의 요구조건을 유지하고 있는가 등을 평가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둘째, 대학평가인증기구는 그들이 제공해준 지침에 따라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깊이 있는 자체 연구 보고서를 준비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 보고서에는 교육의 질에 대한 사정과 교육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수행한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노력 등을 포함한다.

셋째, 대학평가인증기구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인증기구의 기준을 잘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최소한 한 번 이상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현장 심사를 수행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넷째, 대학평가인증기구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현장 검토의 보고서에 문서화된 것에 대응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평가인증기구는 자체 연구보고서와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증빙 서류, 현장 심사 보고서, 보고서에 대한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대응,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인증기구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적합한 정보 등에 대한 인증기구의 분석을 수행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여섯째, 대학평가인증기구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하여 ① 개선을 요구하는 영역을 포함하여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인증기구의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을 사정한 것, ②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학생 성취도에 대해 사정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대학평가인증기구는 고등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이나 '인증 후보' 의 기간 동안, 인증의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즉, 인증기구는 공표한 인증 기준을 근거로 '인증' 과 '인증 후보' 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평가인증기구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인증' 과 '인증 후보' 기간 동안 대학평가인증기구의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이나 프로

그램을 모니터해야 한다. 여기에는 필요에 따라 특별한 평가나 현장 방문 등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대학평가인증기구는 '인증' 하거나 '인증 후보'로 결정한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다)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

고등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평가를 받은 '인증' 또는 '인증 후보'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학평가인증기구는 즉시 해당 고등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통지하고, 주어진 기간 이내에 인증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즉, 프로그램 혹은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프로그램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1년 이상 2년 이하일 경우는 18개월 이내에, 2년 이상일 경우는 24개월 이내에 시정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규정된 기간 이내에 인증기구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인증기구가 기준 준수 기간을 더 확장해 주지 않는다면 즉시 '인증' 혹은 '인증 후보'를 취소해야 한다.

4) 운영 절차

모든 대학평가인증기구는 ① '인증' 과 '인증 후보'에 대한 유형, ② 기관과 프로그램이 '인증' 이나 '인증 후보'를 신청할 때 따라야 할 절차, ③ 인증기구가 수여하는 '인증' 이나 '인증 후보'의 각 유형과 관련하여 수여, 재확인, 재진술, 제한, 거부, 취소, 종료, 기타 조치 등을 결정할 때 적용할 기준과 절차, ④ 인증기구가 현재 '인증' 하거나 '인증 후보'를 수여한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차기 평가를 해야 할 연도, ⑤ 기관이나 프로그램 이름,

학문적 혹은 전문적 자격증, 적절한 고용, 그리고 조직 연합(인증기구의 정책이나 의사결정 기구의 구성원, 그리고 기관의 주요 행정 직원 등) 등의 사항들을 문서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는 일반인들의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평가인증기구는 그 관할하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이나 '인증 후보'의 자격 요건에 대해 제3집단이 논평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대학평가인증기구는 제3집단의 논평을 문서 혹은 청문회, 혹은 두 경우 모두를 통해 논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를 그 결정에 고려해야 한다.

대학평가인증기구의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인증 받은 고등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반대하거나 불만이 제기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정한 방법으로 검토해야 하며 검토 결과를 근거로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 어떠한 불평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인증' 이나 '인증 후보' 공개 시에는 반드시 인증기구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5) 인증 결정의 통지

대학평가인증기구는 교육부 장관, 주 자격증 수여 기관, 평가를 받은 고등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해 의사결정 후 30일 전에 최초의 '인증' 이나 '인증 후보' 판정 또는 '인증' 이나 '인증 후보' 갱신 판정, '인증 유예' 등의 판정 결과를 문서화하여 통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취소', '일시 중지', '인증 종료' 등에 대한 것도 의사결정 후 30일 전에 문

서화하여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피평가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문서로 통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일반 대중에게 공표해야 한다.

IV. USDE의 대학평가인증기구 지정제도의 시사점과 대학평가의 방향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들이 설립되었던 19세기 말 자율적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규제 장치로 시작되어 오늘날 인증평가제도로 정착된 미국의 대학평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 미국의 경우, COPA와 CHEA와 같은 자율적 대학평가협의체 또는 대학협의체 중심으로 대학평가인증기구를 지정해 왔지만 연방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 생각한다. USDE의 대학평가인증기구 지정에 적극적인 관심 표명이 지니는 주요한 의미는 WTO, GATS, Doha Round 등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고등교육시장 개방으로 인한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정부 차원의 품질 보증에 대한 국제적 요구를 정책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연방교육부가 대학평가인증기구를 지정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내용은 학문분야별로 민간평가기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미국 연방교육부는 그 자격 조건, 기구의 조직 행정적 요구사항, 인증 기준 설정 영역, 의사결정 메커니즘, 인증 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 운영 절차, 인증 결정의 통지 등을 명백한 법률로 규정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적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대학평가기구를 지

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평가기구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학문분야별 평가기구가 해당 학문분야 평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연방교육부의 대학평가인증기구를 지정하는 제도가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평가 결과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 연방교육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대학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고등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만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198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설립과 더불어 시작된 대학종합평가와 학문분야는 급격한 대학의 양적성장기의 자율적 질 관리에 일정한 기여를 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대학종합평가와 학문분야 평가는 그 평가 결과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득도, 손해도 없는 평가 준비에 내몰릴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부 학회를 중심으로 학문분야의 평가가 집단 거부되는 불미스러운 사태의 발생은 이러한 평가결과의 미 활용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평가결과의 생산적 활용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일은 급선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율적 질 관리를 기본철학으로 시행해 온 대학평가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 이유는 지난해 연 말 OECD, UNESCO가 제안한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대학평가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국제적 추세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대학이 국제적 경쟁력을 지니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속적으로

고등교육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그 기제가 대학평가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소망스러운 내일을 내다 봐야 한다. 한 해에 20만 달러의 교육적자를 흑자로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낙후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학교 구성원, 정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대학이 세계 교육 혁명의 전반적 추세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한국인의 저력과 가능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해외로 빠져나가는 유학생들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대학들은 개방·경쟁·창의라는 세계화 시대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 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대학, 실력 있는 교수가 있는 대학, 개방시대의 시장 경쟁에서 이기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1%만 바뀌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책 제목이 있다. 제목만 보아도 그 중심 내용을 감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목처럼 현행의 대학평가는 문자 그대로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평가내용의 타당성을 심사숙고해야 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재고하여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대학평가를 담당해 온 대교협은 새로운 대학평가 패러다임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여 국제적으로 호환성을 가지는 평가, 전문성을 제고하는 평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기구의 독립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유와 대교협이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을 찾고자 하는 근본 이유는 같은 맥락이라 생각

한다. 그리고 교육 선진국들이 외부에 의한 대학교육 질 보장 평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결국 자기 나라의 교육 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등교육의 질 보장을 내세워 자국의 고등교육을 상품화하여 다른 나라의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학에 따라 나름대로 사정으로 평가를 유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학회가 주도하여 집단적으로 평가를 거부함으로써 개별 대학차원에서 평가참여 결정을 어렵게 함으로써 대학평가의 공백기가 생긴다면 이는 대학, 학문분야, 학회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자칫 학문분야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거듭 말하지만 동료교수에 의한 동료교수 평가를 통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자율적 질 관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평가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가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우리 나라 대학발전과 학문분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 대학이 가지는 국제 경쟁력은 자율적 질 관리 규제 장치로써 대학평가가 지속적으로 시행된 결과라는 사실을 시금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학의 현실과 실정에 맞는 대학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이나, 평가에 임하는 대학 모두가 1%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대학교육**

참고 문헌

- 김순남(2004). 대학평가의 메타평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CR 2004-46.
- 신재철 외(2004). 제3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패러다임 모색: 목적과 방향. 한국대학교육위원회 연구보고 RR 제2004-2-214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2).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정 협약: 국내이행강화 방안 연구 및 전문가 회의.
- 이현청 외(2003). 미국 대학 평가기구(CHEA)와의 종합적 평가 업무 협력 개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정진위 외(2001). 대학평가 국제비교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차동춘(2000). 미국 고등교육의 변화와 개혁동향. *대학교육*, 104.
- 한국교육개발원(1998). 21세기 고등교육 변화와 전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8-9.
- 허귀진 외(2001). 국내외 대학평가의 동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 RR 2001-4-204.
- CHEA (2002a). *Multi-Lateral Agreements that Address International Quality Assurance*.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 CHEA (2002b). *The Fundamentals of Accreditation: What Do You Need to Know?*.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 USDE (2005). *College Accreditation in the United States*.
<http://www.ed.gov/print/admins/finaid/accred/accreditation.html> 2005년 7월 25일 접속.
- HEA Title IV. http://www.house.gov/ed_workforce/publications/heacomp/hea65p3.pdf#search=USED%20%20HEA%20Title%20IV 2005년 8월 10일 접속.
- HEA Title 34. <http://www.ed.gov/legislation/FedRegister/finrule/1999-4/110199b.html> 2005년 8월 10일 접속.